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47-01

정책자료 2010-01-12

2009년 복지정책평가 컨설팅 보고서

- 경기도 양주시 -

김승권 · 김태완 · 박세경 · 신현웅 · 윤상용 · 이윤경 · 김연우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왔으며,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민·관 복지협력기구의 구성,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의무화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복지분야의 통합전산망 구축도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획 및 추진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역특성을 최대수준에서 고려한 복지정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증대시키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많은 업무가 지방이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의 재정한계로 서비스 확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에 초점을 둔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즉, 2006~2008년 기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복지정책을 직접 평가하였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평가 업무 조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16개 시도 합동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2006~2008년

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컨설팅 보고서는 복지정책의 사후평가에 머물지 않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기 위함이다. 특히, 컨설팅 필요 지자체의 평가결과 심층 분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은 평가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당 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에 대한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사회복지계의 학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0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Contents

요 약 ····· 1

제1장 일반현황 ····· 7

제1절 인구특성 ····· 7

1. 인구 및 가구현황 ····· 7

2. 인구구조 ····· 8

제2절 복지 조직 및 시설 ····· 10

1. 복지조직 ····· 10

2. 복지시설 ····· 11

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 15

제1절 전체 및 영역별 점수 ····· 15

제2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 16

제3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 17

1. 복지총괄 ····· 17

2. 노인복지 ····· 24

3. 아동·청소년복지 ····· 28

4. 보육 ····· 33

5. 장애인복지 ····· 36

6. 지역사회서비스 ····· 43

7. 기초생활보장 ····· 48

8. 자활 ····· 52

9. 의료급여 ····· 54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 61
제1절 전반적 방향 ····· 61
제2절 복지영역별 방안 ····· 62
1. 복지총괄 ····· 62
2. 노인복지 ····· 63
3. 아동·청소년복지 ····· 64
4. 보육 ····· 66
5. 장애인복지 ····· 66
6. 지역사회서비스 ····· 68
7. 기초생활보장 ····· 69
8. 자활 ····· 70
9. 의료급여 ····· 71

부 록 ····· 75

표 목차

〈표 1- 1〉 인구현황 ····7
〈표 1- 2〉 가구현황 ····8
〈표 1- 3〉 연령별 인구 ····8
〈표 1- 4〉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9
〈표 1- 5〉 대상별 인구 ····10
〈표 1- 6〉 복지시설현황 ····11
〈표 1- 7〉 복지시설 구분 ····12
〈표 2- 1〉 전국, 해당그룹, 양주시 영역별 점수 ····16
〈표 2- 2〉 각 영역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17
〈표 2- 3〉 복지총괄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18
〈표 2- 4〉 인구 10,000명당 민간 복지 종사자 수 ····19
〈표 2- 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19
〈표 2- 6〉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20
〈표 2- 7〉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21
〈표 2- 8〉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22
〈표 2- 9〉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건수 ····23
〈표 2-10〉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24
〈표 2-11〉 노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25
〈표 2-1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26
〈표 2-13〉 노인일자리 제공률 ····26
〈표 2-14〉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27
〈표 2-15〉 아동·청소년복지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28
〈표 2-16〉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29

〈표 2-17〉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30
〈표 2-18〉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30
〈표 2-19〉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31
〈표 2-20〉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32
〈표 2-21〉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 ·····32
〈표 2-22〉 보육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33
〈표 2-23〉 보육수요 충족률 ·····34
〈표 2-2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34
〈표 2-2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35
〈표 2-26〉 취약보육 실시율 ·····35
〈표 2-27〉 장애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36
〈표 2-2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37
〈표 2-29〉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37
〈표 2-3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38
〈표 2-3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39
〈표 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39
〈표 2-33〉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40
〈표 2-34〉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41
〈표 2-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41
〈표 2-36〉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42
〈표 2-37〉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42
〈표 2-38〉 지역사회서비스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43
〈표 2-3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44
〈표 2-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44

〈표 2-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45
〈표 2-42〉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46
〈표 2-43〉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46
〈표 2-44〉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47
〈표 2-4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47
〈표 2-46〉 기초생활보장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48
〈표 2-47〉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49
〈표 2-48〉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 ·····50
〈표 2-49〉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50
〈표 2-50〉 급여조정 실적 ·····51
〈표 2-51〉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51
〈표 2-52〉 자활영역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52
〈표 2-53〉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53
〈표 2-54〉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53
〈표 2-55〉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54
〈표 2-56〉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55
〈표 2-57〉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55
〈표 2-58〉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56
〈표 2-59〉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57
〈표 2-60〉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57

그림 목차

[그림 1-1] 양주시의 복지관련 조직 현황 ·····11

요 약

제1장 일반현황

□ 인구특성

○ 양주시의 2008년 말 인구수는 189,492명(외국인 포함)이며, 성별 구성비는 남성 52.29%, 여성 47.71%임.

– 가구수는 69,725가구, 평균가구원수는 2.72명임.

○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73.79%, 유유년인구는 19.12%, 노년인구는 7.08%로 나타남.

– 유년부양비는 25.92%, 노년부양비는 9.59%로 총부양비는 35.51%이며, 노년화지수는 37.03%임.

○ 기초생활수급자는 4,170명, 등록장애인은 9,067명, 다문화가족수는 816명임.

□ 복지조직 및 시설

○ 양주시의 복지업무는 주민지원국 내 주민지원과, 가정복지과, 기업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민지원과는 복지서비스팀, 기초생활지원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장애인복지팀, 자원봉사센터로 나뉘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기획, 기초생활지원,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연계, 장애인복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가정복지과는 여성정책팀, 노인정책팀, 아동·청소년팀, 보육팀, 청소년지원센터로 나뉘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기업경제과는 기업지원팀, 산업입지팀, 투자유치팀, 기업민원팀, 경제에너지팀, 농지관리팀, 희망근로프로젝트TF팀, 일자리센터로 나뉘어 있으며, 이 중 희망근로프로젝트TF팀과 일자리센터에 총4명이 배치되어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일자리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복지시설은 총 219개소로 생활시설 10개소, 이용시설 209개소가 있음.

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 전체 및 영역별 점수

○ 양주시의 복지정책 전체 평가점수는 2,977점 만점에 1,819.65점으로 100점 환산시 61.12점임.

- 이는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한 전국 평균 67.73점보다 6.61점 낮음.
  - 전국 최고점수 78.68점보다 17.56점 낮은 반면, 전국 최저점수 57.93점보다는 3.20점 높음.
- 이는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한 해당그룹 평균 65.97점보다 4.85점 낮음.
  - 해당그룹 최고점수 73.68점보다 12.7점 낮은 반면, 해당그룹 최저점수 60.23 점 보다 0.8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주시의 영역별 점수를 전국 및 해당그룹 평균과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평균과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보육」, 「자활」, 「의료급여」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해당그룹 평균과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보육」, 「자활」, 「의료급여」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각 영역의 지표 점수

○ 복지 총괄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노인 복지의 경우,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만점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보육 영역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 장애인 영역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으며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은 높게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자활영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영역의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 전반적으로 양주시는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의 많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지부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열정이 매우 큼.

○ 그렇지만 복지재정의 확충과 시설인프라 구축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평가 기준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점이 개선되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미

확충 또는 개선된 점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에 완벽히 반영되지는 않은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발전방안은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양주시의 복지정책 평가점수가 낮은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영역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노인복지」,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는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좋은 평가결과와 지역사회복지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가 특히 낮음.

○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가 특히 낮음.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생산품 업무추진의 적절성」이 특히 낮음.

○ 지역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가 특히 낮음.

01

일반현황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인구특성

1. 인구 및 가구현황

□ 양주시의 2008년 말 인구수는 189,492명(외국인 포함)으로 전국 인구의 0.39%, 경기도 인구의 1.68%를 차지함.

○ 성별 구성비는 남성 52.29%, 여성 47.71%로 남성이 다소 많음.

○ 외국인은 7,386명으로 양주시 전체 인구의 3.90%이었으며, 전국 외국인의 3.11%, 경기도 외국인의 9.93%를 차지함.

〈표 1-1〉 인구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국적[3]		
	계	남	여	계	한국인	외국인
전국[1]	48,606,787	24,415,883	24,190,904	47,278,951	47,041,434	237,517
경기도[1]	11,247,899	5,693,947	5,553,952	10,415,399	10,341,006	74,393
양주시[2]	189,492	99,082	90,410	189,492	182,106	7,386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8; 2) 양주시 내부자료, 2009;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 양주시의 가구수는 69,725가구로 전국 가구의 0.42%, 경기도 가구의 1.90% 수준임.

○ 양주시의 평균 가구원수는 2.72명으로 전국의 평균 가구원수(2.92명)와 경기도의 평균 가구원수(3.07명)보다 다소 적음.

〈표 1-2〉 가구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인구수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
전국[1]	48,606,787	16,673,162	2.92
경기도[1]	11,247,899	3,663,101	3.07
양주시[2]	189,492	69,725	2.72

주: 평균 가구원수=총 인구수/가구수.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8; 2) 양주시 내부자료, 2009.

2. 인구구조

□ 양주시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73.79%이며, 유년인구는 19.12%, 노년인구는 7.08%로 나타남.

– 이를 전국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하면, 양주시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51%pt 높은 반면, 유년인구 비율은 1.72%pt, 노년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24%pt 낮았음.

– 경기도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하면, 양주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생산가능인구 1.23%pt 높은 반면, 노년인구 비율은 0.96%pt, 유년인구는 0.27%pt 낮음.

〈표 1-3〉 연령별 인구

(단위: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전국[1]	48,606,787	8,458,098	35,132,663	5,016,026
경기도[1]	11,247,899	2,181,493	8,162,011	904,395
양주시[2]	182,106	34,827	134,382	12,897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8; 2) 양주시 내부자료, 2009.

□ 양주시의 총부양비는 전국 평균(38.35%)보다 낮은 35.51%이며, 이는 경기도의 평균(37.81%)보다도 2.30%pt 낮은 것임.

○ 유년부양비는 25.92%로 전국 평균(24.07%)보다 0.85%pt 높으나, 경기도(26.78%)보다는 0.86%pt 낮음.

○ 노년부양비는 9.59%로 전국 평균의 14.28%, 경기도의 11.08%보다 각각 4.69%pt, 1.49%pt 낮음.

□ 노년화지수는 37.03%로 전국 평균(59.30%)보다 22.27%pt, 경기도 평균(41.46%)보다는 4.43%pt 낮음.

○ 이는 경기도 내 타 지역보다 노인부양에 부담이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보다 작음을 보여줌.

〈표 1-4〉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단위: %)

구분	부양비			노년화지수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전국[1]	24.07	14.28	38.35	59.30
경기도[1]	26.73	11.08	37.81	41.46
양주시[2]	25.92	9.59	35.51	37.03

주: 유년부양비=유년층(0~14세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인부양비=노년층(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화지수=노년층(65세 이상 인구)/유년층(0~14세 인구)×100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8; 2) 양주시 내부자료, 2009.

□ 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170명, 등록장애인은 9,067명, 다문화가족수는 816명임.

○ 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의 0.27%,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의 2.01%를 차지함.

○ 등록장애인은 전국 등록장애인의 0.43%, 경기도 등록장애인의 2.23%을 차지함.

○ 다문화가족은 양주시의 전체 가구 중 1.17%로 전국 다문화가족의 0.62%, 경기도 다문화가족의 2.54%를 차지함.

〈표 1-5〉 대상별 인구

(단위: 명)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록수	다문화가족수
전국[1)]	1,529,939	2,104,889	131,702
경기도[1)]	207,821	407,247	32,086
양주시[2)]	4,170	9,067	816

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07;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양주시 내부자료, 2009.

제2절 복지 조직 및 시설

1. 복지조직

□ 양주시의 복지업무는 주민지원국 내 주민지원과, 가정복지과, 기업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민지원과는 복지서비스팀, 기초생활지원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장애인복지팀, 자원봉사센터로 나뉘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기획, 기초생활지원,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연계, 장애인복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가정복지과는 여성정책팀, 노인정책팀, 아동·청소년팀, 보육팀, 청소년지원센터로 나뉘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기업경제과는 기업지원팀, 산업입지팀, 투자유치팀, 기업민원팀, 경제에너지팀, 농지관리팀, 희망근로프로젝트TF팀, 일자리센터로 나뉘어 있으며, 이 중 희망근로프로젝트TF팀과 일자리센터에 총4명이 배치되어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일자리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1-1〕 양주시의 복지관련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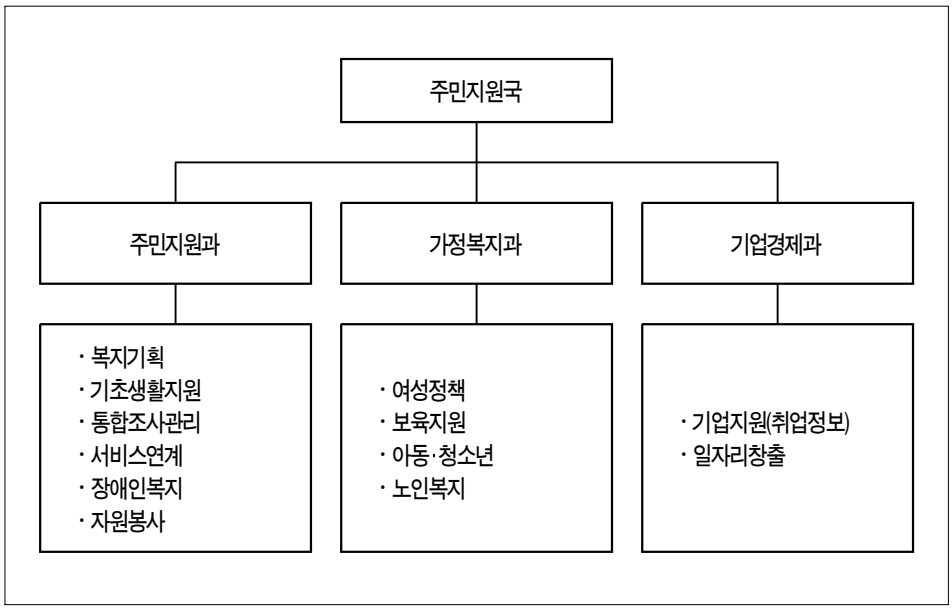

자료: 양주시 내부자료, 2010.

2. 복지시설

□ 양주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219개소로 생활시설 10개소, 이용시설 209개소가 있음.

○ 생활시설의 시설 이용률은 100.00%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양주시 전체 인구의 4.36%가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표 1-6〉 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정원수	이용자수
생활시설	10	316	316
이용시설	209	-	8,266

자료: 양주시 내부자료, 2010.

□ 복지시설별 시설수는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시설은 총 22개소로 양로원 3개소, 무료요양원 1개소, 실비요양원 18개소로 구성됨.

○ 아동복지시설은 총 15개소로 보육원 2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비행청소년 보호시설 1개소로 구성됨.

○ 보육시설은 총 258개소로 국공립 14개소, 정부지원 2개소, 민간 93개소, 가정 149개소로 구성됨.

○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4개소로 수화통역센터 1개소, 재활센터 1개소, 생활시설 10개소, 이용시설 2개소로 구성됨.

○ 종합사회복지관 및 저소득층 복지시설은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됨.

〈표 1-7〉 복지시설 구분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정원수	이용자수	시설구분
종합사회복지기관	-	-	-	-
노인복지시설	22	812	583	양로원(3),무료요양원(1), 실비요양원(18)
아동복지시설	15		442	보육원(2),지역아동센터(12), 비행청소년 보호시설(1)
보육시설	258		7,345	국공립(14), 정부지원(2), 민간(93), 가정(149)
장애인복지시설	14	247	212	수화통역센터(1), 재활센터(1), 생활시설(10), 이용시설(2)
저소득층복지시설	-	-	-	-

자료: 양주시 내부자료, 2010.

KIHASA

02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제1절 전체 및 영역별 점수

□ 양주시의 복지정책 전체 평가점수는 2,977점 만점에 1,819.65점으로 100점 환산시 61.12점임.

○ 이는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한 전국 평균 67.73점보다 6.61점 낮음.

– 전국 최고점수 78.68점보다 17.56점 낮은 반면, 전국 최저점수 57.93점보다는 3.20점 높음.

○ 이는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한 해당그룹 평균 65.97점보다 4.85점 낮음.

– 해당그룹 최고점수 73.68점보다 12.7점 낮은 반면, 해당그룹 최저점수 60.23 점 보다 0.8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주시의 영역별 점수를 전국 및 해당그룹 평균과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평균과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보육」, 「자활」, 「의료급여」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해당그룹 평균과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보육」, 「자활」, 「의료급여」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표 2-1〉 전국, 해당그룹, 양주시 영역별 점수

(단위: 점)

영역(만점)	전국			해당그룹			양주시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복지총괄(246점)	226.32	176.92	132.84	196.80	175.05	150.06	167.28
노인복지(406점)	406.00	284.13	162.40	346.45	257.82	182.35	242.20
아동·청소년(359점)	281.15	211.95	152.90	268.52	227.52	197.84	201.26
보육(211점)	198.34	138.72	90.73	166.69	133.04	109.72	147.70
장애인(545점)	460.54	355.10	227.06	392.52	301.28	227.06	227.06
지역사회서비스(380점)	344.11	247.05	161.92	326.10	259.72	189.20	215.08
기초생활보장(563점)	505.04	413.18	334.49	505.04	422.06	374.01	394.10
자활(122점)	122.00	87.00	48.80	114.68	90.92	67.10	98.82
의료급여(145점)	131.95	102.23	71.05	126.15	96.62	79.75	126.15
계(2977점 만점)	2342.27	2016.29	1724.46	2197.61	1964.03	1793.05	1819.65

주: 영역별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이며, 평가점수 총점은 2,977점임.

제2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 양주시의 각 영역별 지표 점수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 총괄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노인 복지의 경우,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만점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보육 영역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 장애인 영역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으며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은 높게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자활영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영역의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각 영역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단위: 점)

영역	지표명	만점	전국 평균	양주시
복지총괄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	100	71.92	68
노인복지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100	64.31	40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	100	76.98	40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100	68.19	100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100	64.66	71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	100	53.00	40
보육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100	65.75	70
장애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56.32	46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100	71.62	4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100	66.96	40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62.41	52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100	61.56	40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	100	71.24	78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100	79.64	70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100	67.49	70
자활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100	71.31	81
의료급여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00	70.50	87

제3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1. 복지총괄

□ 양주시의 「지자체 사회복지기반 확충도」 점수는 68점으로 전국 평균 71.92점보다 3.92점 낮음.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시간'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특히,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은 만점인 10점으로 전국 평균(7.17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특히,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은 만점의 40%수준인 4점으로 나타남.

• 이는 전국 평균(6.21점)보다 약 2.21점 낮은 수치로 양주시의 인구대비 사회복지기관 면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됨.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의 점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남.

〈표 2-3〉 복지총괄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양주시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15	14.68	1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10	7.17	10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 재정 비율	20	12.95	11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	10	6.21	4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10	6.21	6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건수	20	13.78	11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	15	10.92	11
	계	100	71.92	68

가.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 양주시의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 수는 20.40명으로 전국(24명) 및 중소도시(22명)의 평균보다 다소 적으나 해당그룹(15명)의 평균보다는 많음.

○ 이용시설종사자수는 54명으로 평균(178명), 중소도시(230명) 및 해당그룹(402명)의 평균보다 적음.

– 특히, 해당그룹 평균의 13.44% 수준임.

○ 생활시설 종사자수는 313명으로 전국(205명) 및 중소도시(304명)의 평균 종사자수보다 많음.

○ 기타종사자수는 0명으로 전국(11명), 중소도시(10명) 및 해당그룹(15명)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음.

○ 민간종사자가 생활시설에만 집중되어있고 이용시설 및 기타시설에는 매우 낮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

〈표 2-4〉 인구 10,000명당 민간 복지 종사자 수

(단위: 명)

지역	전체인구수	이용시설종사자수	생활시설 종사자수	기타종사자수	인구 10,000명당 민간 복지 종사자 수
전국	213,536.06	178.37	205.28	10.50	23.90
중소도시	290,112.14	230.09	304.01	9.60	21.64
해당그룹	584,415.42	401.68	467.00	14.95	15.31
양주시	179,914.00	54.00	313.00	0.00	20.4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민간복지 종사자수/인구수)×10,000
- 민간복지종사자: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복지관련 단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포함(단, 비인가, 임의단체는 제외.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 이용 및 생활시설에 한함(이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나 단체는 제외)
  · 민간복지종사자 명단은 각 시설로부터 2008.12월분 급여대장 사본을 받아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되 급여대상 사본은 2009년도 합동평가단의 시도별 평가일정에 맞추어 각 시도로 제출할 것
  ※ 단, 급여대장중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제출
- 인구수: 2008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파악, 합산하여 기재토록 함.

□ 양주시의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은 85.46%로 전국 평균 69.57%, 중소도시 평균 63.38%, 해당그룹 평균 55.73%보다 훨씬 높음.

○ 전체 사회복지기관 55개소 중 47개소가 새올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단위: 개, %)

지역	전체 사회복지기관수	새올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 사용기관수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전국	51.38	35.31	69.57
중소도시	71.56	47.66	63.38
해당그룹	115.68	65.63	55.73
양주시	55.00	47.00	85.4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 (새올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 사회복지기관수/사회복지기관수)×100
- 새올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 사회복지기관수: 관내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기관 수를 의미함.
- 사회복지기관 수: 사회복지기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를 제외한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이 포함됨.(단, 조건부 및 미신고 시설은 제외함)
  ·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타 지자체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되며, 타 지역에 소재하여도 본청에서 직접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포함됨

□ 양주시의 사회복지재정 비율은 17.05%로 전국 평균 21.42%보다 4.37%pt 낮음.

○ 지자체 전체 예산은 해당그룹 평균의 52.81%이나, 사회복지재정은 해당그룹 평균의 44.66%수준으로 나타나, 양주시의 예산이 해당그룹 평균보다 사회복지에 덜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음.

— 지자체 전체 예산은 397,221,877천원으로 전국 평균(342,804,314천원)보다 많으나, 중소도시(510,747,020천원) 및 해당그룹(752,230,365천원)의 평균보다는 적음.

— 사회복지재정은 67,707,686천원으로 전국(70,036,878천원), 중소도시(96,916,410천원) 및 해당그룹(151,592,506천원)의 평균보다 적은 수치임.

〈표 2-6〉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단위: 천원, %)

지역	지자체 전체 예산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 비율
전국	342,804,314	70,036,878	21.42
중소도시	510,747,020	96,916,410	18.52
해당그룹	752,230,365	151,592,506	20.52
양주시	397,221,877	67,707,686	17.0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사회보장비/일반회계 총액)×100
- 사회보장비: 관 2300번 일반회계의 사회보장비 중심으로 작성
  ①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결산 때까지 지출한 경우는 전년도 사업비에 합산
  ② 지자체 특성상(일반회계) 부문에 시 혹은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분모인(일반회계) 부문에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재정(사회보장비)에도 같은 보조금(결산액) 액수를 포함하도록 함(예, 서울시의 보조금)
  ③ 2008년도에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한함
  * 일반회계에서 재해복구와 관련된 대규모 비용은 제외
- 시군구 전체 예산: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액(예산 집행액, 지출총액)으로 산정
  * 특별회계는 제외

□ 양주시의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은 11.07m^2로 전국 평균 94.93m^2, 중소도시 평균 84.90m^2 및 해당그룹 평균 54.97m^2보다 43.90~83.86m^2 작음.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수는 0.09개소로 전국 평균(0.14개소)보다 적으나, 해당그룹 평균(0.01개소)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수는 해당그룹 평균(0.01개소)보다 양주시(0.09개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시설 면적이 좁아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은 양주시가 좁았음.

〈표 2-7〉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단위:명, 개, m^2)

지역	인구수	사회복지 이용시설수	이용시설 면적의 합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전국	213,536.06	29.63	16,475.04	94.93
중소도시	290,112.14	38.30	22,114.85	84.90
해당그룹	584,415.42	57.63	36,545.11	54.97
양주시	179,914.00	17.00	1,991.00	11.0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면적/인구수)×1,000
-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면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이용시설(생활시설 제외)에 대한 신고 설치 면적, 시군구 관내 모든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설치 면적의 합
  · 2008년 12말 현재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 한함.
- 인구수: 2008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파악, 합산하여 기재토록 함.

□ 양주시의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은 5점으로 전국 평균 5.22점, 중소도시 평균 5.92점, 해당그룹 평균 6.84점보다 0.22~1.84점 낮음.

○ 이는 양주시 협의체에 간사가 단 1명도 없고,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도 6월 이후에 수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2-8〉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단위: 명, 개, 점)

지역	풀타임 간사수[1]	파트타임 간사수[1]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기[1]			지역사회협의체 심의이행여부[1]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6월 이전	11월 이전	11월 이후		
전국	73	4	23	103	89	207	5.22
중소도시	40	4	7	36	27	70	5.92
해당그룹	18	0	0	8	9	17	6.84
양주시[2]	0	0	-	1	-	1	5.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중소도시 77개 지자체, 해당그룹 19개 지자체의 총 합계임; 2)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기: 시도지사에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수립: 1, 미수립: 0), 지역사회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이행(1), 불이행(0); 3)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파트타임 간사수×0.5+풀타임 간사수)×3+지역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기+지역복지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 간사: 협의체 소속의 민간 유급간사만을 의미
- 민간 유급 간사: 지역복지협의체 소속된 민간 신분의 유급 직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풀타임으로 봄
  · 주 20~39시간 근무 기준 급여자는 파트타임으로 봄
  · 주 20시간 이하 근무조건의 민간 간사의 경우에는 유급 간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단, 주 20시간 근무자 2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풀타임 간사 1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지역복지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여부
  · 평가대상 연도의 연차별실행계획의 수립시기를 2008년 6월, 11월말, 11월말 이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6월(3점), 11월(2점), 11월 이후(1점))
- 지역복지협의체 심의 이행 여부
  · 연차별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쳤는지를 의미함
  · 심의 이행이란, 시행계획이 내부 결재 과정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최소한 지역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 1차례 이상 대면회의(서면회의는 해당 안됨)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는지를 의미. 이행(3점), 불이행(0점)

□ 양주시의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3건으로 전국 평균 9.94건, 중소도시 평균 9.90건, 해당그룹 평균 11.32건보다 6.90~8.32건 적은 것임.

○ 특화사업 건수는 2.00건으로 전국 평균(9.08건)보다 7.08건, 중소도시 평균(8.92건)보다 6.92건, 해당그룹 평균(9.95건)보다 7.95건 적은 것임.

○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1.00건으로 분석됨.

– 전국(0.99건) 및 중소도시(0.97건)의 평균보다 0.03~0.01건 많지만, 해당그룹 평균(1.37건)보다는 적음.

〈표 2-9〉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건수

(단위: 건)

지역	특화사업건수	민관협력사업건수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건수
전국	9.08	0.99	9.94
중소도시	8.92	0.97	9.90
해당그룹	9.95	1.37	11.32
양주시	2.00	1.00	3.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008년도 특화사업 건수+2008년도 민관협력사업 건수

〈특화사업기준〉

- 특화사업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관련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서에서 기획하는 사업을 의미함. 즉, 특수시책, 특수사업, 구상사업, 비전사업 등으로 일컬어지며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복지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사업을 의미함.
- 국비 및 시·도의 예산지원 사업은 제외되고, 시·군·구 자체 사업을 의미하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모두 해당됨.
- 행사성 사업, 일회성 사업 및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의 지원 사업 등은 제외됨.
  - 사회복지기념일(사회복지의 날, 여성의 날, 어린이날,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등) 중심의 행사성 사업, 연말 등에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은 제외함.
  - 관변단체를 지원 또는 후원하는 사업은 제외함.
- 경상예산사업 중에서 국가유공자 추가수당 등 사회보장성사업은 해당되나 복지관련 행사지원, 건물임차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음.

〈민관협력사업 기준〉

- 민관협력사업이란 시군구가 지역사회내의 복지증진, 인력강화, 민간자원 개발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시군구 자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비예산사업을 모두 포함.
  -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서가 마련되어 있고 단체장의 승인 하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말함.
- 민간복지기관 범위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과 단체(협의체, 위원회 등) 등은 제외함.
- 시군구 사회보건복지부서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공동 참여하는 연찬회, 세미나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양주시의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은 전국 평균과 비슷함.

○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몇몇 지자체의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이 지나치게 높은 극단값이어서 전국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의 평균값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 양주시의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36.87시간임.

○ 전국 평균 46.46시간, 중소도시 평균 50.34시간, 해당그룹 평균 49.84시간보다 약 9.59~13.47시간 적음.

〈표 2-10〉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단위: 명, 시간)

지역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			봉사활동 총시간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등록자 (VMS)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록자	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등록자(VMS)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록자	계	
전국	1,144.43	535.67	1.680.10	60,833.59	3,148.34	63,981.93	46.46
중소도시	1,392.61	372.26	1,764.87	71,990.57	4,220.91	76,211.48	50.34
해당그룹	2,064.84	710.21	2,775.05	111,084.54	3,553.89	114,638.47	49.84
양주시	407.00	0.00	407.00	15,007.00	0.00	15,007.00	36.8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등록자원봉사자 총 활동시간/등록자원 봉사자수(VMS+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등록자원봉사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VMS시스템에 가입된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수(VMS)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총합으로 2008년 1년간 총 16시간 이상 봉사활동 유경험자 임
-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자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도 포함되지 않음(이중등록)

2. 노인복지

□ 양주시의 노인복지의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영역은 낮은 점수를 보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의 세부지표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의 세부지표인 '노인일자리 제공률'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의 점수는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64.31점보다 현저히 낮은 24.31점에 불과함.

– '노인일자리 제공률'의 점수는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76.98점 보다 무려 36.98점이나 낮음.

○ 「장기요양시설 확충도」의 세부지표인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의 점수는 100점으로 전국 평균 68.19점보다 31.81점 높음.

〈표 2-11〉 노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양주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100	64.31	40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분야+민간분야)	100	76.98	40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100	68.19	100

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 양주시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은 0.25%로 전국 평균 0.74%, 중소도시 평균 0.72%, 해당그룹 평균 0.51%보다 낮음.

○ 사업대상자가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적긴 하나,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안전확인횟수, 생활교육인원, 서비스연계인원이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보다 적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안전확인횟수, 생활교육인원, 서비스연계인원은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적음.

- 안전확인 횟수는 10,366건으로 전국 평균(65,276건), 중소도시 평균(88,100건), 해당그룹 평균(86,747건)보다 적음.
- 생활교육인원은 427명으로 전국 평균(8,874명), 중소도시 평균(11,792명), 해당그룹 평균(6,724명)보다 적음.
- 서비스연계인원은 1,884명으로 전국 평균(9,280명), 중소도시 평균(10,916명), 해당그룹 평균(10,781명)보다 적음.

○ 보건복지가족부 배정인원 및 사업대상자수는 전국, 중소도시 및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적음.

- 보건복지가족부 배정인원은 9명으로 전국 평균(22.49명), 중소도시 평균(28.42명), 해당그룹 평균(33.32명)보다 적음.
- 사업대상자수는 198명으로 전국 평균(495명), 중소도시 평균(625명), 해당그룹 평균(722명)보다 적음.

〈표 2-1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단위: 건, 명, %)

지역	안전확인 횟수	생활교육 인원	서비스연계인원	보건복지가족부 배정인원	사업대상자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전국	65,275.58	8,873.53	9,279.85	22.49	494.72	0.74
중소도시	88,099.92	11,792.30	10,916.18	28.42	625.14	0.72
해당그룹	86,747.42	6,741.84	10,781.00	33.32	721.95	0.51
양주시	10,366.00	425.00	1,884.00	9.00	198.00	0.2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실적/사업대상자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2008년 독거노인생활 관리사의 서비스 제공률을 파악.
- 서비스 제공 실적: (안전 확인 횟수/1,040회)+{(2×생활교육 인원)/120명}+{2×(서비스연계 인원)/120명}
- 사업대상자: 보건복지부 생활 관리사+서비스 관리자인원×22명

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 양주시의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분야+민간분야)은 1.15%로 전국 평균 3.29%, 중소도시 평균 3.18% 및 해당그룹 평균 2.32%보다 1.17~2.14%pt 낮음.

○ 공공분야의 제공일자리수는 198건수로 전국 평균(540건수), 중소도시 평균(679건수), 해당그룹 평균(777건수)보다 약 342~579건수 적음.

○ 민간분야의 제공일자리수는 0건으로 전국 평균과 86건 이상의 차이를 보임.

〈표 2-13〉 노인일자리 제공률

(단위: 건, 명, %)

지역	제공일자리수		65세 이상 노인수	노인일자리 제공률 (공공분야+민간분야)
	공공	민간		
전국	540.16	86.51	21,850.31	3.29
중소도시	679.48	116.44	27,798.65	3.18
해당그룹	776.74	152.79	44,565.37	2.32
양주시	198.00	0.00	17,244.00	1.1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노인일자리 제공률: {노인일자리 제공 수(공공분야+민간분야×1.3)/65세 이상 인구수}×100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65세 이상 인구대비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제공수의 비율로 파악함.
- 공공분야(공익, 복지, 교육형)의 경우 노인일자리 제공 수는 실 참여기간을 7개월로 환산한 수를 의미
  · 일자리 제공 수는 참여노인의 실제 근무기간의 합을 7개월로 나누어 환산한 일자리수의 개념임(소수점 발생시 올림 처리)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부담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도 포함.
- 민간분야(시장형, 인력차견형)의 경우 노인일자리 제공수를 지방자체단체가 지원하는 기관 및 노인일자리 박람회의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실적을 의미함. (계산식에서 가중치 부여×1.3)

다.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 양주시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은 236.96%로 전국 평균 87.62%, 중소도시 평균 106.10%, 해당그룹 평균 101.45%보다 높음.

○ 즉, 양주시는 타 지자체과 달리 시설이용대상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고도 여유가 있을 만큼의 많은 요양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표 2-14〉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단위: 명, %)

지역	요양시설 총 정원	시설이용대상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전국	295.25	992.50	87.62
중소도시	451.99	444.78	106.10
해당그룹	659.74	713.05	101.45
양주시	654.00	276.00	236.9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기요양시설 확충률: (노인요양시설 총 정원/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100
- 노인요양시설 총 정원: 노인요양시설, 그룹홈, 소규모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기관의 정원
-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수×0.016(전국 시설입소 수요를 평균한 값)
- 지방자체단체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
  · 타 지방자체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해당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타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타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

3. 아동·청소년복지

□ 양주시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71점으로 전국 평균 64.66점보다 6.34점 높음.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의 점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함.

□ 양주시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53점보다 낮음.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특히, '요보호아동 관래 보호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은 전국 평균 26.89점보다 10.89점 낮은 16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의 점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표 2-15〉 아동·청소년복지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양주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기반의 적절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40	24.84	28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30	21.32	26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30	18.50	17
	계	100	64.66	71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활용도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40	16.39	16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20	9.72	8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40	26.89	16
	계	100	53.00	40

가.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 양주시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은 3.24로 전국 평균 4.33, 중소도시 평균 5.67보다 적으나 해당그룹 평균 3.12보다는 많음.

○ 양주시의 유해업소 등 단속횟수가 전국 및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청소년유해업소수가 적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의 점수는 전국 및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는 63건으로 해당그룹 평균보다 113건, 전국 평균보다 39건 적은 수치임.
-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 건수는 0건임.
- 청소년 유해업소수는 778개로 전국(1,295개), 중소도시(1,680개) 및 해당그룹(2,803개)의 평균보다 적음.

〈표 2-16〉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위: 건수, 개)

지역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횟수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 건수	청소년유해업소 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전국	102.27	8.27	1,295.00	4.33
중소도시	169.21	9.00	1,679.95	5.67
해당그룹	176.58	16.53	2,803.11	3.12
양주시	63.00	0.00	778.00	3.2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속횟수/청소년유해업소수×0.4)+(적발건수/청소년유해업소수×0.6)}×100
- 단속횟수: 공식적으로 일지에 기재되었거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횟수를 말함.
- 단속횟수의 경우 1일 기준으로 결재한 것을 1회로 산정하나 기간을 정하여 단속명령(결재서류 또는 단속결과보고서류에서 확인)이 있는 경우는 횟수를 단속일수로 함. (예: 5일간 단속한 경우 5회로 인정)
- 적발건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 모두 포함

□ 양주시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는 0.70으로 전국 평균 0.50보다 높은 수치이나, 중소도시 평균 0.80 및 해당그룹 평균 0.81보다는 낮음.

○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함.

○ 그러나 CYS-Net의 미시행으로 이와 관련된 점수를 얻지는 못함.

〈표 2-17〉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단위: 개, 회)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여부(설치)[1]	CYS-Net 시행 여부(시행)[1]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전국	133	75	0.50
중소도시	70	42	0.80
해당그룹	19	11	0.87
양주시[2]	1	0	0.7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중소도시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19개 지자체의 합계임; 2)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여부: 설치(1), 미설치(0), CYS-Net 시행여부: 시행(1), 미시행(0); 3)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는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자치단체×0.7)+(CYS-Net 시행 자치단체×0.3)}/시군구수
-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비 보조 기관임.
- CYS-Net 시행 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국고와 지방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은 0.32%임.

○ 전국 및 중소도시의 평균 1.01%보다 0.69%pt, 해당그룹의 평균 1.27%보다 0.95%pt 낮음.

〈표 2-18〉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단위: 명, %)

지역	연간이용자수	수용 정원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전국	181,040.67	569.00	1.01
중소도시	211,360.65	737.43	1.01
해당그룹	441,196.70	1,150.53	1.27
양주시	34,635.00	357.00	0.3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평가점수: {연간 이용자수/(수용정원×연간시설 가동가능일수)}×100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내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07.12.31 현재 등록 운영 중인 시설에 한함)
- 연간 이용자수: 해당 시·군·구내에 있는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전체 이용자수
  ※ 연간 이용자수는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수용정원: 「청소년활동진흥법 별표 2(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법적 수용 정원
- 연간가동가능일수: 시설자체 휴관일을 제외한 일수(08년 기준: 301일)
  * 365일중 휴관일(주1회 휴가+추석+설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기준

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

□ 양주시의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은 3.16%로 전국 평균 8.97%, 중소도시 평균 9.78%, 해당그룹 평균 9.78%보다 낮음.

○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는 해당그룹 평균의 37.57% 수준이나 수급아동 중 방과후 보호를 받는 아동은 해당그룹 평균의 11.86% 수준으로 약 25.71%pt 낮음.

–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는 887명으로 전국 평균(1,339명), 중소도시 평균(1,758명), 해당그룹 평균(2,361명)보다 적음.

– 방과후 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는 28명으로 전국 평균(117명), 중소도시 평균(174명), 해당그룹 평균(236명)보다 약 89~208명 적음

〈표 2-19〉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단위: 명, %)

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방과후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전국	1,338.87	116.37	8.97
중소도시	1,757.95	174.00	9.78
해당그룹	2,361.11	236.47	9.78
양주시	887.00	28.00	3.1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비율: (방과후 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초등학교 아동수/국민기초생활수급 초등학교 아동수)×100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 법적요건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서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프로그램 운영시 모두 포함(방과후 학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초등학교 아동수는 보건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연명부 발행을 이용하도록 함.(보건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복지정책지원→ 사업실적 내역 출력→ 수급자 현황→ 연령별 현황→ 해당년도→ 해당분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수를 파악하도록 함)
- 방과후 아동보호 실시기관별 방과후 보호대상 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와 초등학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제1항에 의하면,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생수 및 방과후 보호대상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산정되어야 함.(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

□ 양주시의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저축률은 75.00%임.

○ 이는 전국 평균(86.14%), 중소도시 평균(86.54%), 해당그룹 평균(83.27%)보다 낮은 수준임

〈표 2-20〉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단위: 명, %)

지역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 중 저축 아동수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전국	137.93	116.58	86.14
중소도시	180.16	157.35	86.54
해당그룹	235.21	199.21	83.27
양주시	124.00	93.00	75.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 중 저축 아동수/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100
- 08.12월 현재 요보호아동 중에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 중 저축 아동수의 비율을 의미함.
- 대상아동은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아동, 공동생활아동, 시설보호 장애아동 등이며, 만 0~17세 아동으로써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함.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

□ 양주시의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은 0.12%로 전국 평균 0.59%, 중소도시 평균 0.61%, 해당그룹 평균 0.57%보다 낮음.

○ '요보호 아동 중 관내보호비율' 및 '관내보호아동 중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수'가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적음.

– 요보호아동 중 관내보호비율은 17%로 전국 평균(82%), 중소도시 평균(86%), 해당그룹 평균(81%)보다 약 45~57%pt 낮음.

– 관내보호아동 중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수는 전혀 없음.

〈표 2-21〉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

(단위: 건, 명, %)

지역	관내 요보호 아동 발생수	관내 보호조치 아동수	요보호 아동 중 관내 보호 비율	관내시설 보호·가정 보호 아동수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수	관내보호아동 중 타 지역 발생 보호 아동수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전국	55.73	34.32	0.82	168.13	11.15	0.05	0.59
중소도시	49.10	40.92	0.86	216.32	2.70	0.01	0.61
해당그룹	82.63	63.32	0.81	285.21	1.42	0.00	0.57
양주시	6.00	1.00	0.17	147.00	0.00	0.00	0.1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시군구 발생&보호조치 아동수(B)/시군구 발생 요보호 아동수(A))×0.7}+{(타 지역 발생&관내보호 아동수(E)/시군구 시설보호&가정보호 아동수(D))×0.3}
- 시군구 발생&보호조치 아동수(B): 해당 시군구 발생 요보호아동 중 관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수
- 시군구 발생 요보호 아동수(A): 요보호아동 발생 아동수('08.12월 기준, 누계)
- 타 지역 발생&관내보호 아동수(E): 타시군구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관내에서 보호한 아동수
- 시군구 시설보호&가정보호 아동수(D):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아동 현원

4. 보육

□ 양주시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전국 평균 65.75점보다 높음.

○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4.25점 높은 수준임.

○ '보육충족률'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는 20점 만점이며 '취약보육실시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잘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됨.

○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표 2-22〉 보육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양주시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보육수요 충족률	20	13.79	20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20	11.38	20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40	26.63	16
	취약보육 실시율	20	13.95	14
	계	100	65.75	70

가.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 양주시의 「보육수요 충족률」은 74.66%로 전국 평균 55.82%, 중소도시 평균 57.58%, 해당그룹 평균 49.68%보다 높음.

○ 전국 평균보다 18.84%pt, 중소도시 평균보다는 17.08%pt 높으며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24.98%pt 높음.

– 이는 보육시설의 정원이 영유아 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보육수요 충족률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을 의미함.

〈표 2-23〉 보육수요 충족률

(단위: 명, %)

지역	전체 보육시설 정원	전체 영유아수	보육수요 충족률
전국	6,159.92	11,995.57	55.82
중소도시	9,560.13	17,935.97	57.58
해당그룹	17,867.68	37,727.16	49.68
양주시	9,423.00	12,622.00	74.6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보육수요 충족률: (보육시설 정원수/전체 영유아수)×100
- 보육시설 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공표되는 지역별 보육시설 보육아동(정원) 현황 자료를 활용함.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는 2개소로 전국 평균 0.36개소, 중소도시 평균 0.99개소 보다 많으며, 해당그룹 평균 2.47개소보다는 적음.

○ 2008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수는 14개소로 2007년도 12개소에서 2개소 증가함.

○ 이는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치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2-2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단위: 명, 개소)

지역	07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	08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	전체 영유아수	보육시설 정원수	보육시설 이용 전체 영유아 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전국	7.51	7.87	11,995.57	6,159.92	4,894.41	531.92	0.36
중소도시	8.04	9.03	17,935.97	9,560.13	7,485.58	572.51	0.99
해당그룹	14.26	16.73	37,727.16	17,867.68	13,950.32	1,074.74	2.47
양주시	12.00	14.00	12,622.00	9,423.00	7,208.00	758.00	2.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08년 국공립 보육시설수−07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일정 수준 충족시 기본점수 부여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 전체 영유아 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수 비율이 100%가 넘는 지역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일정 수준 충족 지역: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4.94%로 전국 평균 30.03%, 중소도시 평균 26.77%, 해당그룹 평균 13.71%보다 낮음.

○ 전국 평균보다는 25.09%pt, 중소도시 평균보다는 21.83%pt,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8.77%pt 낮은 것임.

〈표 2-2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건, %)

지역	전체 보육시설수	평가인증 보육시설수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전국	142.95	42.78	23.19	30.03
중소도시	233.45	60.49	33.95	26.77
해당그룹	495.68	86.68	44.42	13.71
양주시	243.00	13.00	11.00	4.9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2
-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전체 보육시설수)×100
  · 시군구의 전체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 비율
-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은: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전체 보육시설수)×100
  · 시군구의 전체 보육시설 중 당해연도에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의 비율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46.24%로 전국 평균 43.44%보다 높으며 중소도시 평균 46.94%, 해당그룹의 평균 50.47%보다는 낮음.

○ 전국 평균보다 2.80%pt 높으며, 중소도시 평균보다 0.70%pt,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4.23%pt 낮음.

〈표 2-26〉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지역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수	휴일보육 이용수	취약보육 실시율
전국	4,894.41	2,163.31	66.94	75.99	0.19	43.44
중소도시	7,485.58	3,390.31	102.60	121.39	0.38	46.94
해당그룹	13,950.32	6,681.00	172.37	179.95	0.63	50.47
양주시	7,208.00	3,250.00	47.00	36.00	0.00	46.2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취약보육실시율: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휴일보육 이용 아동수/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100
- 시도별 취약 보육 이용 아동수는 e-보육 통계시스템으로 파악함.
- 영아이면서 장애아인 경우는 중복으로 계산함.
- 영아는 만3세 미만 아동, 장애아는 무상보육대상 장애아를 의미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실적)에 의함

5. 장애인복지

□ 양주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46점으로 전국 평균 56.32점보다 낮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과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는 전국 평균(11.35점)보다 높음.

□ 양주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은 100점 만점에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71.62점보다 낮음.

○ 특히,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은 만점의 40%이하 점수를 보임.

□ 양주시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100점 만점에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66.96점보다 낮음.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4개의 세부 평가지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만점의 40%이하 점수를 보임.

〈표 2-27〉 장애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양주시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30	17.90	12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25	15.10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5	6.62	6
	「장애인차별금지법」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20	11.35	14
	장애인전용 주차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10	5.36	4
	계	100	56.32	46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100	71.62	4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50	33.71	20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30	21.23	12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10	5.81	4
	우선구매비율 충족품목 비율	10	6.21	4
	계	100	66.96	40

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 양주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은 0%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양주시의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2-2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단위: 명, %)

지역	등록 장애인 수	직업재활 시설 수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총 정원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전국	9,686	1.56	30.23	0.35
중소도시	13,067	2.00	36.42	0.30
해당그룹	21,884	2.79	27.26	0.13
양주시	8,204	0.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수)×1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근로장애인 정원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의 정원 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 장애인 인구수: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설치율이 0%인 지자체는 최저점수 부여

□ 양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0%로 이는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거주시설은 4개소이나 총 정원은 0명으로 분석되어 통계제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29〉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단위: 명, %)

지역	등록장애인수	거주시설수	거주시설 총 정원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전국	9,686	5.66	100.39	1.19
중소도시	13,067	7.16	132.47	1.08
해당그룹	21,884	10.53	60.05	0.26
양주시	8,204	4.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거주시설입소 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수)×100
-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이들 시설의 입소 정원 총수
- 장애인 인구수: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02~06년까지 신고한 조건부시설에서 전환된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제외
※ 설치율이 0%인 지자체는 최저점수 부여

□ 양주시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62.51%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63.76%)보다 1.25%pt, 중소도시 평균(72.04%)보다 9.53%pt, 해당그룹 평균(74.25%)보다 11.74%pt 낮음.

〈표 2-3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개소, %)

지역	설치대상 건물수(설치의무 항목수)	기설치 건물수(설치 항목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14,998.54	9,130.94	63.76
중소도시	20,354.49	14,426.48	72.04
해당그룹	33,916.74	24,841.32	74.25
양주시	19,166.00	11,980.00	62.5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정원기준): (기설치 건물수/설치대상 건물수)×10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별 설치율(시·군·구별 파악)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별도증빙 불필요)

□ 양주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는 4점으로 분석됨.

○ 이는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양주시의 경우 이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나타냄.

〈표 2-3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단위: 개, 점)

지역	인쇄물 음성출력기기[1)]	점자자료 제작[1)]	영상 전화기[1)]	수화 통역사[1)]	장애인전담 도우미[1)]	보청 기기[1)]	확대경[1)]	휠체어[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전국	18	36	70	51	81	59	59	53	1.84
중소도시	7	16	40	25	32	24	27	28	2.58
해당그룹	3	4	17	8	4	10	13	14	3.84
양주시	0	0	1	0	0	1	1	1	4.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중소도시 77개 지자체, 해당그룹 19개 지자체의 합계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는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인쇄물음성출력기기·점자자료 제작·영상전화기·수화통역사·장애인전담도우미·보청기기·확대경·휠체어에 대한 준수여부 파악(*1: 여, 0: 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인쇄물음성출력기기·점자자료 제작·영상전화기·보청기기·확대경 설치 및 수화통역사·장애인전담도우미 배치 등)에 대한 준수여부 파악
  * 기관별 설치 또는 배치 여부만 파악(사용횟수는 무관함)

□ 양주시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으로 전국 평균 13.29건, 중소도시 평균 19.90건, 해당그룹 평균 55.79건보다 상당히 낮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부과건수임.

〈표 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단위: 건수)

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전국	13.29
중소도시	19.90
해당그룹	55.79
양주시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건수/시군구수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건수

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 양주시의 장애인복시 서비스 수혜율은 15.64%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높으나 전국 및 중소도시의 평균보다는 낮음.

○ 전국 평균(20.89%)보다 5.25%pt, 중소도시 평균(20.33%)보다 4.69%pt 낮음.

〈표 2-33〉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단위: 명, %)

지역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자수	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전국	1,708	9,685	20.89
중소도시	2,465	13,067	20.33
해당그룹	2,987	21,884	13.64
양주시	1,283	8,204	15.6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수/등록장애인수)×100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수: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혜한 자들의 총수(연평균)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수혜한 경우 이중으로 처리함.
- 복지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보조서비스
  *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증빙 불필요)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 현황: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함.
  ·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불가한 장애수당 수혜자 현황(예. 주소지가 다른 시설 수급자)은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한 장애수당 수혜자 수와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현황자료상 장애수당 수혜자 수를 합하여 입력

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 양주시의 우선구매비율 준수율은 10.00%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80.05%)보다 70.05%pt, 중소도시 평균(77.87%)보다 67.87%pt, 해당그룹 평균(56.45%)보다 46.45%pt 낮아 해당그룹 평균에 비해 전국, 중소도시 평균과의 차이가 큼.

〈표 2-34〉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단위: 개, %)

지역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수	우선구매대상 구매품목 수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전국	8.95	11.69	80.05
중소도시	8.58	11.66	77.87
해당그룹	6.95	13.16	56.45
양주시	1.00	10.00	1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우선구매 비율 충족 품목 수/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 품목 수)×100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개수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은 0.48%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전국 평균(57.07%)보다 56.59%pt, 중소도시 평균(55.09%)보다 54.61%pt, 해당그룹 평균(35.11%)보다 34.63%pt 낮음.

〈표 2-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단위: 원, %)

지역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 생산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총액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전국	110,265	226,692.80	57.07
중소도시	116,419	232,606.10	55.09
해당그룹	150,896	376,427.00	35.11
양주시	311	65,070.00	0.4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 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18개 우선구매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입총액: 우선구매품목 18개의 구매액 총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은 0.00%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의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전국 평균(58.59%)보다 58.59%pt, 중소도시 평균(61.33%)보다 61.33%pt,

해당그룹 평균(37.26%)보다 37.26%pt 낮음.

〈표 2-36〉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단위: 원, %)

지역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총액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전국	17,801.08	45,785.41	58.59
중소도시	37,372.91	56,558.75	61.33
해당그룹	73,855.47	126,916.20	37.26
양주시	0.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 비율: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 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18개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 기타 물품구입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총액: 우선구매품목 18개 이외 물품 구매액 총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비율은 5.57%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전국 평균(49.78%)보다 44.21%pt, 중소도시 평균(47.76%)보다 42.19%pt, 해당그룹 평균(38.60%)보다 33.03%pt 낮음.

〈표 2-37〉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단위: 개, %)

지역	우선구매 비율 충족 품목수	우선구매 비율 충족 품목 비율
전국	8.96	49.78
중소도시	8.60	47.76
해당그룹	6.95	38.60
양주시	1.00	5.5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수/우선구매대상 품목수)×100
- 우선구매대상 비율 충족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수: 18개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6. 지역사회서비스

□ 양주시의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52점으로 전국 평균 62.41점보다 낮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양주시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는 100점 만점에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61.56점보다 낮음.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는 50점 만점의 40%이하 점수를 보임.

○ 또한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역시 50점 만점의 40%이하 점수를 보임.

□ 양주시의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전국 평균 71.24점보다는 높음.

○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데 비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점수임.

〈표 2-38〉 지역사회서비스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양주시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40	25.36	2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30	19.06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30	17.98	12
	계	100	62.41	52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50	28.29	20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50	33.26	20
	계	100	61.56	40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50	35.05	3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50	36.19	43
	계	100	71.24	78

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양주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은 3%로 전국, 중소도시 평균보다는 높은 반면,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낮음.

○ 전국 평균(2.83%)보다 0.17%pt, 중소도시 평균(2.44%)보다 0.56%pt 높은 반면, 해당그룹 평균(3.63%)보다는 0.63%pt 낮음.

〈표 2-3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단위: 건, %)

지역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전국	2.83
중소도시	2.44
해당그룹	3.63
양주시	3.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건수/시군구수)×10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건수: '08년 시군구당 사업시행 건수
  * 사업건수는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양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은 0.83%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전국 평균(1.29%)보다 0.46%pt, 중소도시 평균(1.43%)보다 0.6pt, 해당그룹 평균(1.37%)보다 0.54%pt 낮음.

〈표 2-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단위: 기관, %)

지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제공기관수	제공기관이 2이상인 사업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전국	2.83	5.72	1.25	1.29
중소도시	2.44	5.25	1.45	1.43
해당그룹	3.63	7.74	2.16	1.37
양주시	3.00	4.00	1.00	0.8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제공기관수/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수)×0.5}+{(서비스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 수/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수)×0.5}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 수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
  * 사업실적은 보건복지부의 현황 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양주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는 21명으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특히, 해당그룹 평균은 350.58명으로 조사되어 양주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임.

〈표 2-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단위: 명, %)

지역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취업자수
전국	249.69
중소도시	266.77
해당그룹	350.58
양주시	21.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업자수/시군구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창출 일자리 수
  * 월별 누계 인원, 정규·비정규직 등 바우처 사업에 종사한 모든 근로자 포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 양주시의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은 7.30%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전국 평균(22.18%)보다 14.88%pt, 중소도시 평균(16.47%)보다 9.17%pt, 해당그룹 평균(15.72%)보다 8.42%pt 낮음.

〈표 2-42〉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단위: 명, %)

지역	중도 해지자수	전체 서비스 이용자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전국	483.32	2,407.19	22.18
중소도시	576.26	3,588.51	16.47
해당그룹	1,069.58	6,618.37	15.72
양주시	125.00	1,712.00	7.3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 (중도 해지자수/전체 서비스 이용자수)×100
  * 4대 바우처 중 노인돌보미 제외
-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 '08년 연간 전체 서비스 이용자수
- 중도 해지자수: 사업 참여자 중 지원기간 종료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된 인원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은 0.98%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전국 평균(1.35%)보다 0.37%pt, 중소도시 평균(1.33%)보다 0.35%pt, 해당그룹 평균(1.19%)보다 0.21%pt 낮음.

〈표 2-43〉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단위: 명, %)

지역	서비스 이용자수	시군구별 인구수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전국	2,494.28	213,850.87	1.35
중소도시	3,704.71	290,441.94	1.33
해당그룹	6,781.79	584,939.80	1.19
양주시	1,756.00	179,914.00	0.9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서비스 이용자수/인구수)×100
  * 4대 바우처 공통적용
  * 4대 바우처 사업 대상자수: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수
- 서비스 이용자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수
  * 사업대상자수: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대 바우처 대상자수
- 인구수: '08년 12월말 기준(통계청 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사회서비스 바우처 통합정보 운영자 시스템상 실적과 동일하게 입력

다.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

□ 양주시의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0.60%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전국 평균(83.03%)보다 2.43%pt, 중소도시 평균(86.51%)보다 5.91%pt, 해당그룹 평균(89.98%)보다 9.38%pt 낮음.

〈표 2-44〉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단위: 천원, %)

지역	집행액	예산액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전국	1,132,460.9	1,324,809.4	83.03
중소도시	1.524.771.1	223.274.5	86.51
해당그룹	2,592,469.3	2,866,864.0	89.98
양주시	738,287.9	916,001.0	80.6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집행액/예산액)×100
- 집행액: 시군구별 예산 실 집행액
- 예산액: 시군구별 예산 편성액(결산서 기준)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양주시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은 90.47%로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높음.

○ 전국 평균(81.75%)보다 8.72%pt, 중소도시 평균(88.88%)보다 1.59%pt, 해당그룹 평균(88.11%)보다 2.36%pt 높음.

〈표 2-4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단위: 천원, %)

지역	이용액	생성액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전국	1,114,984.3	1,604,458.0	81.75
중소도시	1,524,771.1	1,725,650.6	88.88
해당그룹	2,592,469.3	2,961,420.3	88.11
양주시	738,287.9	816,025.4	90.4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이용액/생성액)×100
- 이용액: 바우처 이용액
- 생성액: 바우처 생성액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7. 기초생활보장

□ 양주시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전국 평균 79.64점보다 낮음.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 가구수'는 50점 만점으로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48.7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전국 평균(30.94점)보다 낮음.

□ 양주시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전국 평균 67.49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국 평균보다 2.51점 높은 점수임.

– 특히,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40점 만점에 28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2.59 높아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표 2-46〉 기초생활보장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양주시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50	48.70	50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50	30.94	20
	계	100	79.64	70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40	25.41	28
	급여조정 실적	40	28.05	28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20	14.02	14
	계	100	67.49	70

가.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 양주시의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는 73.40명으로 전국 평균 89.84명, 중소도시 평균 88.63명, 해당그룹 평균 89.84명보다 적음.

○ 이는 전국 평균보다 16.44명, 중소도시 평균보다 15.23명, 해당그룹 평균보다 16.44명 적음.

– 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부담이 적어 수급가구가 잘 관리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47〉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단위: 가구, 명)

지역	수급가구수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전국	3,681.92	39.34	89.84
중소도시	4,669.03	50.66	88.63
해당그룹	6,201.53	68.42	89.84
양주시	2,641.00	36.00	73.4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 수급자수/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08.12.31일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현원으로 잡혀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기초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직급상관 없음)수를 시군구 단위로 합산한 수(새올행정시스템 권한이 확인된 인원수)
- 수급자 수: 2008.12월 31일 현재 수급자수(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양주시의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은 0건으로 전국 평균 0.28건, 중소기업 평균 0.33건, 해당그룹 평균 0.35건 보다 적음.

○ 모니터링 요원수가 0명으로 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8〉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

(단위: 명, 회)

지역	모니터링 요원수[1)]	중앙현장 조사횟수[1)]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전국	44	116	0.28
중소도시	20	38	0.33
해당그룹	6	8	0.35
양주시	0	0	0.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중소도시 77개 지자체, 해당그룹 19개 지자체의 합계임; 2)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 (모니터링 요원수×0.7)+(중앙현장조사 횟수×0.3)
- 모니터링 요원: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파견자 포함)
- 중앙현장조사요원 파견: '08년 중 중앙현장조사에 참여한 연인원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 양주시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13.91%로 전국 평균 12.41%, 중소도시 평균 12.91% 및 해당그룹 평균 13.91%보다 모두 높거나 같음.

○ 전국 평균보다 1.05%pt, 중소도시 평균보다 1.00%pt 높고, 해당그룹 평균과는 같음.

– 이는 양주시의 신규수급자 발굴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

〈표 2-49〉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지역	신규 수급자수	총 수급자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전국	794.35	6224.18	12.41
중소도시	997.58	7883.18	12.91
해당그룹	1,440.11	10,337.11	13.91
양주시	589.00	4,234.00	13.9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신규 수급자수/총 수급자수)×100
- 신규 수급자수: '08년 1~12월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가구원수
- 총 수급자수: '08.12.31일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수

□ 양주시의 급여조정 실적은 0.75건으로 전국 평균 0.76건, 중소도시 평균 0.75건, 해당그룹 평균 0.72건과 비슷한 수준임.

○ 이는 급여조정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표 2-50〉 급여조정 실적

(단위: 건, 가구)

지역	보장중지 건수	급여감소 건수	급여증가 건수	수급자 가구수	급여조정 실적
전국	881.58	4,633.56	4,716.06	3,681.92	0.76
중소도시	1,074.48	5,619.40	6,203.01	4,669.03	0.75
해당그룹	1,615.37	7,265.37	7,597.21	6,201.53	0.72
양주시	815.00	2,873.00	3,463.00	2,641.00	0.7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급여조정 실적: (보장중지 건수/수급자가구수×0.5)+(급여감소 건수/수급자가구수×0.25)+(급여증가 건수/수급자가구수×0.25)
- 급여조정의 범위: 수급자가구 중 '08. 1~2월까지 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되거나 급여가 변경결정 되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가구 수(중복포함, 누계)
- 보장중지 건수: 수급자에게 중지된 건
- 급여감소/증가건수: 생계, 주거급여가 감소/증가된 건
- 가구원 전부, 일부 전출, 사망, 군입대, 교정시설 수용, 보장시설입소, 행불(가출), 최저생계비 기준(현금급여) 변경에 따른 급여조정 등은 제외
- 수급자가구 수: '08.12.31일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가구 수

□ 양주시의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은 0.28건으로 전국 평균 0.32건, 중소도시 평균 0.32건, 해당그룹 평균 0.29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는 긴급지원의 활성화 정도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줌.

〈표 2-51〉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단위: 건)

지역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지원 결정 건수	차상위계층등 긴급지원 결정 건수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전국	17.58	61.28	118.17	0.32
중소도시	18.47	71.44	137.56	0.32
해당그룹	19.95	105.32	190.52	0.33
양주시	11.00	64.00	135.00	0.2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건수/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0.5}+{(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건수/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0.5}
-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건수: '08.1~12월까지 의료지원을 제외한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지원 결정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수
- 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건수: '08.1~12월까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지원 결정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수
  * 공통: 수급자에는 특례, 시설수급자를 포함함(차상위수급자 제외)
  * 새올행정시스템 관련자료 추출

8. 자활

□ 양주시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100점 만점에 81점으로 전국 평균 71.31점보다 높음.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

〈표 2-52〉 자활영역의 전국 평균 및 양주시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양주시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30	24.23	26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30	19.63	21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40	27.51	34
	계	100	71.31	81

가.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 양주시의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은 32.3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중소도시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전국 평균(29.32%)보다 2.99%pt 높았으며, 중소도시 평균(34.27%)보다는 1.96%pt, 해당그룹 평균(38.61%)보다는 6.3%pt 낮음.

〈표 2-53〉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단위: 명, %)

지역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전국	80.47	287.45	29.32
중소도시	100.67	294.43	34.27
해당그룹	144.00	350.74	38.61
양주시	42.00	130.00	32.3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100
1)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시장진입형+인턴형+공동체창업+개인 창업+취업알선
2)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근로유지형+사회적응 프로그램+사회적일자리형+시장진입형+인턴형+공동체창업+개인창업+취업알선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업그레이드형 이상(사회적일자리형 제외)
-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인원
(* 보건복지부의 자료 활용) * 노동부 사업 제외

□ 양주시의 '수급자의 취업·창업률'은 5.63%로 전국 평균, 중소도시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전국 평균(8.3%)보다 2.67%pt, 중소도시 평균(9.8%)보다 4.17%pt, 해당그룹 평균(8.52%)보다 2.89%pt 낮음.

〈표 2-54〉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단위: 명, %)

지역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취업인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창업한 인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급자의 취업 · 창업률
전국	5.14	4.21	117.95	8.30
중소도시	7.08	5.03	118.99	9.80
해당그룹	6.84	6.95	147.37	8.52
양주시	2.00	2.00	71.00	5.6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취업 및 창업 인원/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100
1) 취업 및 창업한 인원: 수급자중 취업 및 창업한자+자활특례 상향 이동자+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취업알선+노동부사업
- 취업 및 창업 인원: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중 취업이나 창업한 인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수: 수급자중 업그레이드형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보건복지부에서 자료 활용)

□ 양주시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11.27%로 전국 평균, 중소도시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7.48%)보다 3.79%pt, 중소도시 평균(7.78%)보다 3.49%pt, 해당그룹 평균(6.93%)보다 4.34%pt 높음.

〈표 2-55〉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지역	수급자 중 취업 창업자수	특례상향 이동자	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전국	3.38	3.21	2.13	117.95	7.48
중소도시	3.17	3.59	2.87	118.99	7.78
해당그룹	3.32	2.74	4.26	147.37	6.93
양주시	0.00	8.00	0.00	71.00	11.2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탈수급자수/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100
1) 탈수급자수: 수급자 벗어난 인원(자활특례 포함)+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취업알선+노동부사업
- 탈수급자 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인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수: 수급자중 업그레이드형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분기별 자활사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 의함

9. 의료급여

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 양주시의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는 1.26일로 분석됨.

○ 의료급여 자격처리는 수급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격변경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자격이 변경된 날짜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어 정상 처리된 날짜 간의 간격을 좀 더 줄여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함.

〈표 2-56〉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단위: 건, 일)

지역	자격변경처리 건수	총 소요일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전국	3,490.23	4,210.93	1.20
중소도시	4,348.32	5,207.19	1.20
해당그룹	6,476.53	7,743.32	1.21
양주시	2,104.00	2,654.00	1.2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총 소요일/'08년 전체 자격변경 건수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자격건당 평균 소요일
- 2008년도 전체 자격변경 건수: 공단에 접수된 시군구별 자격변경 처리 총 건수
- 총 소요일: 각 건수의 처리에 소용된 소요일의 총 합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0.07%로 나타남.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

– 즉, 관리하는 수급권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는 수급권자를 지도·감독해야함.

〈표 2-57〉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단위: 일, %)

지역	2006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전국	63.39	62.55	63.74	0.01
중소도시	61.80	60.56	61.81	0.01
해당그룹	58.58	57.54	58.55	0.01
양주시	50.87	49.32	55.19	0.0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3년 평균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2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 및 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파악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입·내원일수와 3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평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0.09%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과 같이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

– 그러므로 관리하는 수급권자의 급여가 적정한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사위행위를 하는 수급권자를 지도·감독해야함.

〈표 2-58〉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단위: 원, %)

지역	2006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전국	1,969.27	2,080.93	2,206.29	0.05
중소도시	2,003.10	2,103.60	2,232.64	0.05
해당그룹	2,138.21	2,254.42	2,365.74	0.04
양주시	2,001.00	2,115.00	2,357.00	0.09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3년 평균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2
-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원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평균 진료비와 3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의 증감률을 평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은 0.00%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사례관리 대상자는 질병, 빈곤 등을 갖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임.

– 따라서 과다이용의 징후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상담 및 계도를 통하여 적정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표 2-59〉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단위: 일, %)

지역	2006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2007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2008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전국	700.97	780.12	727.08	-0.02
중소도시	734.38	808.47	750.14	-0.03
해당그룹	760.31	840.53	770.11	-0.03
양주시	640.00	735.00	713.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전년 대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가율+3년 평균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가율)/2
-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급여일수의 증감률을 파악함
- 해당 시군구의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와 3년간 사례관리 대상자의 급여일수 증감률을 평가함.
  *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11개 지역)에서는 집중관리군 대상자만 해당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양주시의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은 100%로 채용률이 높음.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함.

〈표 2-60〉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단위: 명, %)

지역	채용인원	배치기준 인원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전국	1.93	1.98	102.67
중소도시	2.25	2.38	99.18
해당그룹	2.21	2.53	87.89
양주시	1.00	1.00	10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중소도시는 77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인권/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기준인원)×100
- 2006년도 배치기준: 전국232개 보장기관 배치완료
- 2008년도 배치기준:
  <텔레케어센터 미설치 시군구>
  ·수급권자 6천명 미만: 1명 ·수급권자 6천명~15천명 미만: 2명
  ·수급권자 15천명~25천명 미만: 3명 ·수급권자 25천명 이상: 4명
  <텔레케어센터 설치 시군구>
  ·수급권자 2천 명당 공무원 또는 의료급여 관리사 1인을 배치
- 2008년도 추가 배치기준: 수급권자 5천 명당 시군구에 대하여 관리사 0.5명으로 산정하여 추가 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KIHASA

03

복지정책 발전방안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제1절 전반적 방향

□ 전반적으로 양주시는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의 많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지부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열정이 매우 큼.

○ 그렇지만 복지재정의 확충과 시설인프라 구축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평가 기준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점이 개선되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미 확충 또는 개선된 점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에 완벽히 반영되지는 않은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발전방안은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양주시의 복지정책 평가점수가 낮은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영역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노인복지」,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는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좋은 평가결과와 지역사회복지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가 특히 낮음.

○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가 특히 낮음.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생산품 업무추진의 적절성」이 특히 낮음.

○ 지역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가 특히 낮음.

제2절 복지영역별 방안

1. 복지총괄

□ 복지총괄 종합의견

○ 양주시의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사회복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복지총괄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양주시의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은 해당그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 평균의 1/5밖에 되지 않음.

– 양주시는 시설인프라 측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을 제안함.

–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이용시설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사례관리 등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임.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에서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반면, 특화사업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민간자원을 개발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복지수준을 꾀할 수 있는 사업 증설이 필요하며, 일회성의 행사보다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지역복지특화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보다 큰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에서 양주시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록자는 0명으로 확인됨.
– 지역사회를 위해 적당한 장소에서 알맞은 시간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인력 배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등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노인복지

□ 노인복지 종합의견

○ 노인복지의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영역은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영역은 저조한 점수를 보임.

○ 타 지표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율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복지비용이 불균등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노인복지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해당그룹의 타 지역에 비해 사업대상자수가 적음.
– 이들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특히 생활교육 실적이 미비하며, 안전 확인 또한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 연계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의 수행의 향상을 필요로 함.
• 특히, 생활교육과 안전 확인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한 시간동안 제공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고 수혜노인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에서는 양주시 지역은 민간 일자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영역의 일자리도 해당 그룹의 평균에 비해 부족한 상태임.

- 양주시는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이외에 지자체의 특성이나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 향후 민간일자리를 비롯하여 공공영역의 일자리 개발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0년 노인복지의 평가지표는 장기요양시설 확충도와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정성임.

-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수요와 공급간의 조율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임.
-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변동자료의 적기처리와 부적정 급여의 관리가 요구됨. 이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항목으로서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아동·청소년복지

□ 아동·청소년복지 종합의견

○ 아동·청소년복지의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아동·청소년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에서 연간이용자수와 수용정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수용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함.
- 청소년 수련시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프로

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실무자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과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은 매우 낮음.

- 방과후 아동보호의 질적 및 양적 확대가 강화되어야 하며, 개별아동의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됨.
- 저소득층의 아동과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실제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통장, 반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에게 도움을 주어야 함.
- 특히,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과 시설보호 장애아동, 공동생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들 아동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저축률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개설 아동대상 저축정보제공 등 다양한 증진정책을 마련해야 함.

○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 비율 및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도 매우 낮음

- 관내 요보호 아동 6명 중 1명만이 보호되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아동이 보호 조치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함.
- 발생된 요보호 아동을 관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으로 보호하고, 타시군구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도 관내의 요보호아동과 마찬가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주시는 'We Start'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는 경기도 지원 30%, 양주시 지원 70%로 운영, 1개소는 양주시에서 100%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어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4. 보육

□ 보육 종합의견

○ 보육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육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전국, 중소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매우 낮음.

- 양주시의 전체 보육시설수는 해당그룹의 수치보다 약 250개소 정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11개소 밖에 증가하지 못함.
  - 그러나 최근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평가인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므로 인증률의 상승이 기대됨.
  - 그렇지만 평가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2기 평가인증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취약보육 실시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중소도시, 해당그룹의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남.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 수에 비해 영아, 장애아 보육 이용수와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보임.
- 취약 계층에 있는 영아, 장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기관이 더 증설되어야 하며, 보육 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5.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종합의견

○ 양주시의 경우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등 전 지표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 성과에서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욱 컸음.

□ 장애인복지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 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 분야의 지표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율 등은 매년 평가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음.

– 양주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수가 미설치 된 것으로 분석되어 시설 설치가 우선시 되어야 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양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거주시설수 4개소, 정원 0명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8개소에서 218명이 이용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 등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의 경우,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에 대한 지원 범위가 핵심 평가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 지급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 장애인에 대한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의 경우에도 복지종합 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오는 항목으로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선구매대상 구매품목 10개 중에서 우선구매비율을 충족한 품목이 1개 밖에 없는 등 전국 평균 및 해당 그룹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신규로 설치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근로작업장으로 설치하고, 여기에서 우선 구매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다면, '장애인복지 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의 양 지표 모두에서 이전보다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종합의견

○ 양주시의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평가결과는 복지총괄을 비롯한 총 9개의 평가영역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상대적 취약성이 심각한 것을 보여줌.

– 평가영역별 비교 결과,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및 사회서비스 사업 활용도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사회서비스 영역의 전반적인 평가점수를 감소시키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양주시의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평균 사업시행 건수는 전국 평균 건수에 비해 많지만, 해당 그룹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임.

–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반의 확충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평균 제공기관 수가 해당그룹의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수는 1개에 불과하여 복수의 제공기관이 기관 간의 경쟁 촉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사회서비스사업의 주요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취업자 수는 해당그룹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서비스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서비스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면서 이용률이 전국 평균 및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 예산 집행률의 경우 해당 그룹내 평균 집행률은 물론 전국 평균 집행률 보다 낮은 반면,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의 실적은 전국 평균과 그룹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의 표적화가 이루어진 바,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높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 집행률이 서비스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임.

○ 양주시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됨.

–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내 돌봄기능의 사회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는 바, 복지서비스 확충의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제안함.

– 특히, 지자체가 전적으로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사회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공급주체를 유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이 확충됨으로써 동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7.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종합의견

○ 양주시의 기초생활보장 영역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분야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측면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니터링 참여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음.

– 모니터링에 대한 참여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인 중앙부처(보건복지부)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라 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 참여를 증진시켜야 함.

○ 긴급지원 활성 시행실적에서는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지원 연계실적이 다소 낮아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남.

– 기초보장 영역의 신규수급자 발굴, 급여조정, 긴급지원 활성화 지표는 매년 평가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음.

–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에 비해 타지원 연계실적이 적은 것이므로 긴급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다른 지원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8. 자활

□ 자활 종합의견

○ 양주시의 자활영역 평가결과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수급자의 탈수급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수급자의 취업·창업률이 낮아 전체적인 평균을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활영역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취업·창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특히, 취업·창업은 수급자들에 대한 사례관리(창업자), 지역 기업들과 협력이 필요하므로 지역자활센터와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9. 의료급여

□ 의료급여 영역 개선방안

○ 자격관리 신속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변동이 접수되면 가능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 자격처리 신속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격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시·군·구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전산 상에 자격오류가 발생할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요양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권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보류가 되는 경우.

•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문제가 발생.

• 회수되지 않은 의료급여증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과 비용 상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수급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격변경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 수급권자 평균 입내원일수과 진료비 증가율은 의료급여 재정안정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진료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지자체 단위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365일 이상 진료자에 대한 관리, 선택병의원대상자 관리, 본인부담제도 관리 및 철저한 자격관리 등으로 진료비나 입내원일수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비 증가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은 의료이용량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인 상담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일수를 경감시키려기는 노력에 대한 것임.

–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줄어들면 본 지표이외에 수급권자 진료비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지자

체의 노력이 필요함.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은 보건복지부가 사례관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들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였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함.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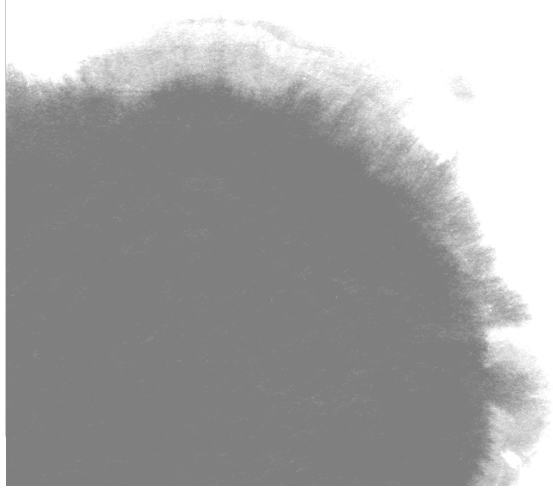

부록

〔부록 1〕 컨설팅을 위한 현지회의 간담회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Happy Life YangJu
행복도시
YangJu
양주시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Happy Life YangJu
양주시